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94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이해민 · 김선민 · 이학영  
조인철 · 민병덕 · 정춘생  
이정문 · 신장식 · 김준형  
강경숙 · 황운하 · 안도걸  
손명수 · 서왕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④·⑤ (생략)</p>	<p>-----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	---